

제 주 지 방 법 원

제 2 형 사 부

판 결

사 건 2014고합213 존속폭행치사
피 고 인 홍○○ (1986년생), 서비스직
검 사 이준식(기소), 장은희(공판)
변 호 인 법무법인 원
담당변호사 문성윤
판 결 선 고 2015. 4. 2.

주 문

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.

이 유

범 죄 사 실

피고인은 평소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인 피해자 강○○가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.

피고인은 2014. 10. 22.경 피해자, 아버지인 홍○○와 '○○○ 식당'에서 저녁을 먹고 난 후, 다같이 귀가하였다가 혼자 외출하여 술을 마시고, 같은 날 23:30경 주거지로 귀

가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한 모습을 발견하자 화가 나,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, 왼쪽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고,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장파열 등으로 인한 심폐기능부전으로, 같은 달 23. 15:55경 제주시 도령로 65에 있는 제주 한라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였다.

증거의 요지

1. 피고인의 법정진술

1. 증인 홍○○의 법정진술

1. 홍○○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

1. 각 수사보고,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

1. 사망진단서, 부검감정서

1. 한라병원응급실 초진기록지 등

법령의 적용

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

형법 제262조, 제260조 제2항, 제259조 제2항(유기징역형 선택)

1. 작량감경

형법 제53조, 제55조 제1항 제3호(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)

양형의 이유

1. 처단형의 범위 : 징역 5년 ~ 30년

2. 양형기준의 적용

[유형의 결정] 폭력 > 폭행범죄 > 제3유형(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)

[특별양형인자] 가중요소 : 존속인 피해자

[권고영역의 결정] 가중영역

[권고형의 범위] 3년 ~ 5년

3. 선고형의 결정 : 징역 3년

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모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, 이는 인류에 반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워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.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므로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행위 및 결과의 위법성이 중하다. 게다가 피고인은 작년 9월경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다.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이로 인해 더 병약해질 것을 걱정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사소한 당김과 밀침이 있었다고 항변하지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황상 그 폭행의 정도가 가벼웠다고 보이지 아니하고, 설령 피해자의 건강을 걱정했다는 피고인의 변명이 모두 사실이라고 보더라도, 앞서 든 이 사건 범죄의 중한 위법성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이 친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패륜적 성격의 범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,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명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결코 정당화할 수는 없다.

다만, 피해자의 유족이자 피고인의 아버지와 형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,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행하여진 점,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,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점, 피해자가 사망의 결과에 이르는데 피해자의 체질적 요인도 상당 부분 기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.

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, 성행, 가정환경,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.

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허일승 _____

 판사 장수진 _____

 판사 채희인 _____